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장

제 66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7. 7(화)

## 공 고

○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공고 제2015 - 862호

##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07월 7일  
남 원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통합방위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함(안 제4조)
  - ▶ 작전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음식 지원
  - ▶ 예비군 음식 및 의료 지원,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
  - ▶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(중요시설, 목진지 등)
  - ▶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(체육관, 학교 등)

**3. 의견제출**

가.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이유)
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·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할 곳 :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) / 남원시청 안전재난과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47), 직접방문,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라.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안전재난과(063-620-696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**4. 붙임 :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**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작전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
- 마.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,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항방물자 지원대책
- 바.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(중요시설, 목진지 등)
- 사.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(체육관, 학교 등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협의회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협의회 심의사항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-----</p> <p>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라. 작전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마.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,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바.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 유선 지원대책(중요시설, 목진지 등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사.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 (체육관, 학교 등)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